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접근방안으로서의 간문화주의

허영식

I.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상품과 화폐의 세계적인 교류만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사람도 역시 국제적 수준에서 점점 더 많이 이동하고 있다. 오늘날 간문화적 만남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세계 여러 곳에서 정책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적인 담론에서 세계화와 문명충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통합과 평행사회(평행문화·평행세계)의 긴장관계가 거론되고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과제는 가능하면 문명충돌의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간문화적 대화와 실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놓여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과제는 한편으로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통일성·시민성 사이의 긴장관계(Georgi, 2008: 79-81; 허영식, 2010: 63-65)를 고려하면서, 평화로운 공존·병존·교류·통합 따위가 가능하도록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는 데 놓여 있다. 이 맥락에서 다문화와 사회통합(혹은 국가정체성)의 긴장관계를 둘러싼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즉, 다문화성과 집단정체성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이주국가에서는 이주운동,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정, 이주배경을 가진 시민의 사회통합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지향한 노력과 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문제에 적합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범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해 왔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 반전이 이루어졌으며, 이 맥락에서 관용적 다문화주의에서 국가통합정책으로 방향을 선화하거나 아니면 다문화주의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간문화주의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전이나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일단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탐구를 통해 적절한 사회통합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허영식·정창화, 2012a: 4-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지속가능한 정책·담론을 위한 대안적 접근방안으로서 특히 간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간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간문화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다음 사회통합을 위한 간문화주의의 정책적·제도적 실천사례를 소개한다.

II. 간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간문화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볼 때, 다문화적 현실(다문화성)에 대하여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간문화담론·소통·대화를 통하여 보다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간문화만남·선택·변형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탐색운동과 시험적 운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도와 움직임은 네 가지 측면, 즉 사이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는 의미에서의 간성(間性, interity),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의 간문화성

(interculturality), 투쟁과 대화로서의 간문화적 만남, 그리고 토론과 논쟁으로서의 간문화적 선택과 변형에서 다문화주의 및 초문화주의와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초 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간문화주의는 차이(다문화주의)나 공통점(초문화주의)뿐만 아니라, 경계와 접촉의 서로 겹치는 부분, 상호의존·침투에 주의를 기울인다. 문화란 풍속습관과 가치, 인정을 위한 투쟁(다문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법적 원리와 규범, 이해관계, 분배를 둘러싼 투쟁(초문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간문화적 문제점은 문화와 정치 사이의 연관성(다문화)에 국한된 것도 아니며, 시민사회와 개인들 사이의 연관성(초문화)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상호이해는 타자와 이방인을 인식하고 인정(다문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통점과 친숙한 것을 인식하고 인정(초문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역사를 다문화적 혹은 초문화적 관점에서 완결시키는 일보다는 오히려 역사를 언제나 다시 열리는 목적을 갖고 탐색 및 시험을 하는 과정이나 운동을 더 강조한다. 문화와 집단의 특수성(다문화)을 넘어서서, 다양한 국제관계의 보편성(초문화)을 넘어서서 간문화적 운동을 선택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여성용 두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금지(초문화)나 관용(다문화)보다 더 분화되고 민감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행위영역을 바라볼 때, 간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가능하면 개인의 자율성에 도달하도록 고무시키고, 가족과 출신배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하지만 부모의 종교와 문화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유도 부여한다. 초문화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집단이 국가와 학교에 의한 명령과 부당한 요구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파하고 해석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간문화성은 고유한 행위분야나 행위체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천영역이 겹치는 국면에 속한다. 또한 인정과 가치의 문화적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이에 놓인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간성과 관련된다. 문화적 측면과 (사회적 배분과 경제적 이해

관계의) 구조적 측면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된다. 혼성화(hybridization)는 모든 간문화적 행위영역에 특징적인 현상이다. 체제이론의 의미에서 행위체제는 간문화사업을 간체제(intersystem)관계로 만들어간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슬람여성의 두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경우, 학교·경찰·법원·청소년복지사업 사이에서 간체제관계가 발생한다. 민족청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나 테러분자들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파병할 경우, 정치·군사·경제 사이에서도 역시 간체제관계가 등장한다.

간문화적이라는 말을 누가 고안했는가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기 어려우며, 대개 미국의 ‘간문화교육국’과 연관시켜 그 유래를 거론하고 있다. 이 부서는 1924년부터 1945년 동안에 걸쳐 활동을 하였으며, 그동안 전개되고 추진되었던 동화 및 융해의 문화변용정책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유럽에서는 특히 서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온 노동자들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1970년대 말에 유럽이사회에 의해서 사회제도의 구성과 확충을 위하여 ‘간문화선택(intercultural option)’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경우 그동안 문화적 요소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동화정책을 중단하고, 독일의 경우 그동안 진행되었던 독일문화 위주의 선별정책, 그리고 영미계통의 다문화주의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어쨌든 간문화주의와 간문화교육이라는 용어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혹은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Demorgon and Kordes, 2006: 33-35; 허영식, 2010: 34-38; 허영식·정창화, 2012a: 23-25).

여기서 다시 간문화성의 핵심적인 특징인 ‘간성’ 혹은 ‘사이공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것은 일단 하나의 큰 문화를 가정하는 단일문화에 저항한다. 이 맥락에서 또한 자기가 속한 민족이나 국민을 중심에 놓으려는 경향인 자민족 중심주의와도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간문화주의는 단순한 다문화주의와도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단순한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뜻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속한 문화를 여러 다른 문화 중

하나의 임의적인 문화라고 간주하려는 평준화의 시각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단일한 통일성(단일문화)과 다양성(다문화)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간성 혹은 사이공간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홀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발생과정을 제3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타자를 만날 경우, 단순히 바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생활세계(global life-world)’(김태원, 2012: 73-75)의 내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문화에서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때 낯섬의 정도도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타자 사이의 연결과 결합 혹은 뒤얽힌 관계(entrelacs, 앙트트라)에서 연유한다(Waldenfels, 2010: 22-26).

간문화주의에서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간문화이해를 강조한다. 이 맥락에서 일단 이해하려는 준비와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감수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간문화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도전으로 다가올 경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아니면 적어도 바라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인지의 측면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문제가 되는 무엇 또는 누구로 하여금 언어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 말해질 수 있어야 하고 언어를 통하여 묘사(토의·논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그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미 갖고 있던 이해(판단·비난·거부 따위 포함)를 일시적으로 정지·중단·유보해야 한다.

하지만 간문화이해가 언제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문화’와 더불어 심지어 ‘몰이해의 문화’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고, 순박하게 ‘인정의 도덕’에만 호소하지도 않는 균형감각을 갖춘 문화의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간문화이해에 대해 순진하게 과도한 기대를 걸 경우,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 즉 오해와 오인, 잘못된 판단으로 반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정반대의 귀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이해의 원인이나 출처를 일방적으로 타자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타자에게 돌리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타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즉 타자의 시각·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자세와 태도가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간문화이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점취득(SPT: social perspective-taking)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관점변경(perspective-changing)을 수행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Liebsch, 2010: 48-54; Porschke, 2011: 106; 허영식·정창화, 2012b: 105-109).

Ⅲ.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간문화주의로의 전환

1. 다문화주의 모형의 한계에 대한 비판

캐나다와 비교해볼 때, 영국이 도대체 국가수준에서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영국은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나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련의 사회적·정치적 사건(보기: 2001년 영국 북부도시에서 발생한 비백인계 소수집단 관련 갈등·폭력사태, 2001년의 9·11 국제테러, 2005년 7월 7일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담론이 확산되었다(육주원·신지원, 2012: 120-121; 허영식·정창화, 2012a: 43).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좌파의 비판과 우파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다문화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

좌파의 비판	우파의 비판
- 문화주의에 경도되어 있으며, 인종차별주의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은폐 - 정체성과 문화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하고, 인종적·문화적 소수자를 이미 정해진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분류 - 인종적 소수집단을 집단적 타자로 간주하고, 몇몇 대표의 의견만을 반영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소수집단 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내부갈등을 조정·해결하지 못함	- 분리주의의 조장 - 공동의 가치 위협 -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미명 아래 건전한 토론 방해 - 극단주의 테러분자 양산 - 흑인 청소년의 범죄 묵인 - 여성억압의 기제로 이용

출처: 육주원·신지원, 2012: 122-126; 허영식·정창화, 2012a: 43 재구성

상기 비판 중에서 최근에는 우파의 비판에 더 비중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통합,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한편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 전체의 통합 혹은 국가정체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담론과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육주원·신지원, 2012: 126-130; 허영식·정창화, 2012a: 44).

유럽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시했던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반전이 이루어졌다. 2003년 이래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체계적인 국가통합정책의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해당자에게 이수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에서 구속력 있는 통합강좌, 귀화를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시험, 이산가족의 결합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어학시험, 그리고 나중에 뒤따라 들어오는 이주자에 해당하는 최소결혼연령의 상향조정이 포함되었다. 다문화주의적 관용정책과 반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체계적 국가통합정책을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다문화주의적 관용정책과 체계적 국가통합정책의 비교

다문화주의적 관용정책	체계적 국가통합정책
- 스스로를 다문화적인 나라라고 규정 - 관용의 정책과 차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계획 - 공식적 목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춘 외국인의 충분한 참여, 경제적 상황의 개선,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상태로 조정, 차별의 금지 - 보수당 수상이 이슬람사원과 힌두교 협회 방문, 외국인을 위한 지방선거권 도입 - 개방적인 사회와 국가의 본보기 제시 - 귀화절차의 간소화 -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 좌파정당과 더불어 보수정당도 모든 수준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의원 확보 - 이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 국가수준에서 이슬람·힌두교의 의식과 제도 인정	- 해당자에게 구속력 있는 통합강좌 요구 - 귀화를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시험 - 이산가족의 결합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어학시험 - 나중에 뒤따라 들어오는 이주자에 해당하는 최소결혼연령의 상향조정 - ‘출신국가에서의 첫 번째 통합’에 관한 법률 마련(2006)(네덜란드로 이주하기 전 출신국가에서 ‘A1-’ 수준(문어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의 간단한 어학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이주허가; 특히 가족이주자에게 해당) - 정부의 부르카금지법 의결(2011)(공공장소에서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을 가리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프랑스가 취한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출처: Michalowski, 2006: 31-32; Thraenhardt, 2011: 2-4; Conrad, 2011b: 1-2;
허영식·정창화, 2012a: 143 재구성

이제 독일 보수진영의 입장을 분석해 볼 때, 정치가들이 그동안 독일에서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는 진단을 명시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관건을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혹은 민주법치국가에 입각한 시민정치문화로서의 헌정애국주의)의 구현에서 찾고 있다. 이 맥락에서 또한 언어·종교와 같은 문화적 요소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초문화주의(공화주의적 보편주의)와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초문화주의는 철저한(엄격한) 세속주의(정교분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주도문화는 부분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나 인간상에 대한 신봉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초문화주의가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은 최근 프랑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보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착용 금지조치; 대도시의 거리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 금지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프랑스의 초문화주의와 독일의 주도문화 비교

프랑스의 초문화주의	독일의 주도문화
- 공식적으로 공화주의적 보편주의 표방 - 엄격한 세속주의(정교분리주의)에 입각 - 민족적·종교적 동일시에 대하여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과 자세를 전제로 함 -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거리유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됨 - 최근 프랑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공공장소에서 부르카금지, 거리에서 예배금지)에서 확인 가능 - 하지만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차별대우, 차별의 경험, 사회적 공간축면에서 이주민의 고립과 분리가 다시 민족과 종교로 회귀하는 과정을 조장하게 되면 문제가 됨	- 헌정애국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혹은 민주법치국가에 입각한 시민·정치문화)에 입각 - 부분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나 인간상에 대한 신봉을 추가로 요청 - 일부 사회·정치세력은 독일의 전통과 역사에 입각한 문화적 요소도 주도문화에 포함시키려고 시도 - 명예살인, 강제결혼, 이슬람여성이 걸치는 두건과 부르카, 이슬람여학생의 교육활동(성교육, 생물과목, 수영강습, 수학여행) 참여 여부, 평행사회, 다문화주의, 주도문화 따위와 관련된 문제를 둘러싸고 통합관련 담론 및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출처: Kleber, 2011: 1-2; Conrad, 2011: 1-2; 허영식·정창화, 2012a: 153 재구성

독일 보수진영에서는 대개 다문화주의와 주도문화를 양립하기 힘든 대립개

념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도문화에 대한 최근의 담론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와 주도문화를 대립관계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을 수정하려는 시도도 역시 관찰할 수 있다. 다문화와 주도문화의 두 가지 준거를 서로 대조적이면서 양립 불가능한 요인으로 간주할 경우, 가상적인 대안을 설정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미 다문화사회 혹은 이주사회가 된 독일의 경우를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 혹은 이주사회는 자체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을 위하여 주도문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문화적·민족적·종교적 측면에서 독일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내적 다양성을 일단 인정하고, 그 다양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아무래도 다 좋다.’라고 하는 가치상대주의의 위험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Lau, 2007: 5; 허영식·정창화, 2012a: 153-154 재인용).

2.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문화논쟁의 함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2000년에 접어들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주도문화(Leitkultur, leading culture)’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양하게 드러났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자면, 그 하나는 주도문화 대신에 헌정애국주의를 사회통합의 관건으로 간주하자는 입장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헌정애국주의를 넘어서서 추가로 공통의 역사·전통·언어·종교 등 문화적인 요소를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문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집약할 수 있다(허영식·정창화, 2012a: 45).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의 틀 속에서 주도문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자유민주사회의 규범적 기반으로서 헌정에 충실한 공화주의적 시민정치문화로 풀이할 수 있는 헌정애국주의 혹은 헌

정문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의사항으로서 일단 이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정애국주의에 더하여 추가로 보다 더 좁은 의미에서 공통의 문화적 요소(역사·전통·언어·종교 따위)를 주도문화에 함축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헌정애국주의 자체의 문화적·역사적 기반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적어도 소수집단의 입장에 바라볼 때, 사실상 다수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이나 동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맥락에서 1960년대에 헌법학자인 보켄포르데(Boeckenfoerde)가 제기했던 질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민주헌정국가는 그 자체가 스스로 창출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규범적 전제조건에 기초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대체로 다음과 같은 통찰이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즉, 현대의 세속화된 국가는 규범적 기초를 자체의 자원을 통해서 채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종교와 같은 전통, 어쨌든 집합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윤리적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Lammert, 2006: 136; 장준호, 2012: 101; 허영식·정창화, 2012a: 51-52 재인용).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헌정애국주의(혹은 헌정문화)와 다른 한편으로 전통문화(혹은 민족문화)를 포함한 역사와 전통을 서로 분명하게 분리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다문화와 한국의 (집단)정체성’이라는 의제에 주의를 기울여 볼 때, 다문화사회를 지향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및 국가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규범적 기초로서 일단 헌정애국주의 혹은 헌정문화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을 공화주의적 주도문화 혹은 시민정치문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할 만하다.

하지만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및 국가정체성을 위한 기초 혹은 출발점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설명과 해석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국가는 다문화의 계승·발전과 다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국가는 다문화를 고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가까운 장래에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다문화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앞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도 역시 보다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국가의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담론과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허영식·정창화, 2012a: 52-53; 허영식·정창화, 2012b: 31-33).

3. 다문화주의에서 간문화주의로의 전환

다문화사회의 통합관점에서 간문화주의에 주의를 기울일 때, 각종 요인에 의해 당사자가 봉착할 수 있는 장애물을 가능하면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프로그램을 참고로 삼을 만하다. 이 맥락에서 간문화에 입각한 아이디어와 조치는 사실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며, 관점은 실용적이고, 제도가 준거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장애물제거에 중점을 두고 간문화를 이해할 경우, 문화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조직의 구성·운영원칙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으며, 다문화주의의 이론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민족공동체나 문화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Terkessidis, 2010: 114-115; 허영식·정창화, 2012a: 54 재인용).

장애물제거에 중점을 둔 간문화의 이해에서 출발할 때, 주된 목표는 실제로 다양성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특징적인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놓여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존의 여러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론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 서로 다른 관점의 상대성, 혹은 여러 문화의 공동생활에

주된 관심이 놓여 있다. 이때 제기되는 질문은 그러한 특징적인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가이다. 이 맥락에서 우선 제도를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왜냐하면 제도는 정책과 여기에 부응하는 조치에 의해 사실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종종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차별의 문제에 대처하거나 여러 문화 사이의 대화(즉, 간문화대화)에 도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모토는 ‘각자가 모두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을 계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여기에 부응하는 각종 운동이나 캠페인은 대부분 물거품으로 끝나거나 얼마 지나서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이때 변화를 위한 진정한 자극이나 유인책도 부족하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압력행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에서 의식적으로 도입한 변동을 통하여 비로소 앞서 말한 특징적인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간문화를 ‘사이에 놓인 문화’ 또는 ‘변동의 과정에 놓여 있는 구조’로도 역시 이해할 수 있다(Terkessidis, 2010: 114-115; 허영식·정창화, 2012a: 54-55 재인용).

1990년대부터 간문화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소통·대화·학습·교육·능력(역량)·개방·지향·개발 따위의 키워드가 종종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간문화 능력과 간문화개방은 사회복지와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오늘날 여러 곳에서 주도적인 이념 혹은 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허영식, 2013: 12-20; 허영식·김진희, 2013: 34-4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국적기업에서는 간문화관리 혹은(이것보다 더 폭넓은 개념인) 다양성관리와 관련된 주제가 점점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허영식, 2013: 20-26; 허영식·정창화, 2012a: 92-133).

이제 간문화프로그램을 내용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안고 있는 개개인에게 장애물제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을 요구하고 동시에 진흥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와 자기책임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다름 아니라 개개인이 여러 생활영역에서 부딪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놓여 있다. 이 맥락에서 제도의 문화(조직원칙, 규칙과 규범), 인적자원의 구성, 물질적인 기초. 그리고 제도의 기본적인 전략추진방향의 네 가지 차원 혹은 측면에서 제도의 변화가 요청된다(Terkessidis, 2010: 142; 허영식·정창화, 2012a: 57-59 재인용).

〈표 4〉 제도변화를 위한 간문화프로그램 모형

제도문화	인적자원	물질적 기초	전략방향
- 다양성을 고려한 조직코드 혹은 조직규약 마련 - 간문화코드라는 의미에서 검증가능한 기준 마련 (모토: 측정되는 것이 행해진다.) - 지도층(경영진)의 프로그램 지원 의지 - 간문화변동을 지향한 제도변화 추구	- 지 위 · 부 문 · 접 근가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장애요인과 차별문제 해소방안 모색 - 인적자원구성의 변화를 위해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조치 강구 - 다양성관리와 어긋나는 특정한 문화적 혹은 계층 관련 전제조건 해소방안 마련	- 좁은 의미에서의 장애물제거 고려 - 간문화적 공간계획 설계 · 운영 (다양성을 위한 설계, 설계를 통한 포용) - 특정한 집단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기획 · 운영 - 국제성의 감각을 제고시키는 조치 강구 - 간 문화 브랜딩 (intercultural randing) 모색	- 제도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지향(정책 · 전략) - 간문화주류화 혹은 다양성주류화를 지향한 프로그램 고려 - 의사결정의 불평등한 효과(결과)에 대한 감수성 제고 - 기회균등과 참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구 (참조: 유럽집행위원회가 『사회통합핸드북』에서 권고한 주류화 절차)

출처: Terkessidis, 2010: 144-161; 허영식·정창화, 2012a: 59 재구성

여기에 더하여 다문화주의에서 간문화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정황증거로서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체류외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과정을 들 수 있다.

〈표 5〉 체류외국인 정책의 전개과정

단계	내용과 특징
① 무정책	- 외국인의 장기거주를 원하지 않았던 각국 정부 중에는 자국영토에 외국인거주자가 증가하더라도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정책으로 일관한 경우가 있었다. -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지역사회에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해당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 노동자 정책	- 이민자는 기간제 노동인력으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며, 귀환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 이주민에게 단기비자만 발급하고,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
③ 동화 정책	- 이민자가 지역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여 기존사회로 흡수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 이민자가 본국에서 학습한 생활방식과 문화유형은 무시하고, 이주해 들어온 지역의 현지문화를 신속하게 학습하고, 원래의 정주민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④ 다문화 정책	- 이민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영주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한다. - 이민자가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교육받은 지식과 문화가 현지문화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 출신국가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하여 무시·멸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 자녀에게도 부모의 출신지 언어를 교육받도록 지원하고, 민족별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도 권장한다.

〈표 5〉 계속

단계	내용과 특징
⑤ 간문화 정책	- 이민자를 지역사회 일원으로 간주하고, 출신문화가 현지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과 공통점이 있다. - 다문화정책은 민족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데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간문화정책은 다양한 민족집단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 지역사회에서 민족간 격리현상이 나타나고, 이민자 밀집지역이 평행사회(게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밀집지역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공동거주시설(기숙사·아파트)에 특정 민족집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민족별 할당제를 도입하고, 밀집거주지역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출처: Wood, 2009: 22-26; 오정은, 2011: 197-199; 허영식·정창화, 2012a: 26 재구성

Ⅳ. 사회통합을 위한 간문화주의의 정책적·제도적 실천사례

유럽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나라로 그동안 간주되었던 영국에서도 역시 최근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분적으로 간문화주의가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의 다양성을 구성하기 위한 접근방안을 개발한 ‘간문화도시’라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개념규정을 해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간문화적 접근은 기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기회 균등과 존중을 넘어서서, 공공적 공간, 시민문화, 그리고 제도의 다원주의적 변형을 추구한다. 따라서 문화적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계속해서 쇄신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 접근방안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겹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성화(hybridization)

되는 데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우대할 수 있도록 도시가 적절한 진흥전략을 개발해야 한다”(Intercultural City, 2009; Terkessidis, 2010: 131-132; 허영식·정창화, 2012a: 56 재인용).

이와 유사한 개념과 구상은 유럽집행위원회가 2008년도에 제안한 프로그램인 ‘간문화도시’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하여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부터 ‘다양성관리(managing diversity)’라는 핵심용어 아래 논의되고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구상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틀 속에서 소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원칙을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이주의 영역에도 역시 전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Terkessidis, 2010: 132; 허영식·정창화, 2012a: 56 재인용).

상기한 ‘간문화도시’라는 프로젝트와 같은 맥락에서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근에 간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는 공통의 기본원칙을 갖고 여러 가지 간문화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시적 차원에서 틸부르크(Tilburg)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표 6〉 간문화도시의 간문화사업 사례

사업	개요
① 세계의 집 운영	네덜란드 문화 및 언어수업교실, 휴게실, 외국인 상담실을 갖춘 일종의 마을회관이다.
② 사교의자 설치	거리를 지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잠시 앉아 쉬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주민화합이라는 상징성을 살려 소파제작에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했다.
③ 세계축제 개최	일반인과 외국계 주민의 만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세계축제는 세계 각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관련 행사다.

〈표 6〉 계속

사업	개요
④ T-퍼레이드 지원	외국인 주민단체와 네덜란드인 단체가 통합하여 공동으로 기획하는 거리축제가 매년 8월에 열리고 있다. 시의 지원 이외에도 여러 다국적기업의 후원이 매년 증가하여 점차 행사규모가 커지고 있다.
⑤ 이웃중재자 프로그램 운영	외국계 주민과 네덜란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이웃간의 매우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출처: 오정은, 2011: 205-209; 허영식·정창화, 2012a: 57 재구성

‘유럽 간문화대화의 해’(2008) 사업을 소개한 책자의 머리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인 얀 피겔(Jan Figel)은 간문화대화의 의미와 적실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신념의 풍부함은 유럽기획(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영감과 창의성의 힘찬 출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분열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으며 참된 간문화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유럽연합 관련제도, 회원국, 시민사회가 그러한 공동체의 발생을 촉진하고 진흥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유럽 간문화대화의 해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2008년을 넘어서서 간문화대화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우선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회원국과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반자와 함께 유럽의 해를 통해 발생한 동력을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다. 우리가 보다 개방적인 마음과 의식을 갖고 진행한다면 간문화유럽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고 있다. 간문화유럽은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참여,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력한 공동체와 사회적 결속의 기반으로 삼는 공동체인 것이다”(Figel, 2009: i).

유럽은 문화적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 내 시장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세계화는 많은 나라의 다문화적 성격을 강화시켰으며, 언어와 종교, 민족적·문화적 집단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이 맥락에서 유럽의 여러 사회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 모형과 작별을 고하고 있다. 즉,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여러 문화가 병존하는 사회, 그리고 이주자로 하여금 다수가 지배하는 주류문화에 적응하도록 기대하는 사회와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유럽에 특징적인 다양성을 가능하면 최적의 상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회는 간문화대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간문화주의의 개념과 구상은 서로 다른 여러 문화집단 사이의 유익한 교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결국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 유럽정체성과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간문화대화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Europäische Kommission, 2009: 3).

간문화대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다양한 정책적 조치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대외관계, 연구지원정책, 지방·지역개발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영역과 관련된다. 캠페인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유럽·회원국 수준에서 미디어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된 정보·광고캠페인, 명예대사 임명, 유럽연합 교육문화국이 주도한 유럽 수준의 각종 행사와 운동, 홍보용 프로젝트,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 권장, 국가·지역 수준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와 운동, 다른 유럽연합제도(유럽의회, 지역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의 파견단)의 참여가 속한다(Europäische Kommission, 2009: 4). 그리고 유럽 간문화대화의 해(2008)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중점주제가 선정되었다.

〈표 7〉 간문화대화 사업의 중점주제

주제	개요
① 문화와 미디어	자기가 속한 문화의 묘사는 상호이해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문화협력은 유럽의 결속과 유럽정체성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다. 유럽시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출신배경이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방식은 개인의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상투적인 표상을 확증하거나 아니면 반증한다.
② 소수 집단	간문화대화는 소수집단의 능력과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며, 소수집단에게 다른 소수집단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해당연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소수민족 로마(Roma)에 대한 제1차 유럽정상회담’이었다.
③ 이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출신의 이주자 혹은 유럽연합 바깥에서 들어온 이주자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 사이의 간문화대화는 사회적 가치와 참여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의 연대의식과 결속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문화와의 대화는 세계화된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기여한다.
④ 종교	점점 더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과 종교의 다양성은 오해와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로에 대한 개방성과 지식을 촉진하는 상호존중의 대인관계와 교류는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간문화대화가 종교와 신앙공동체를 위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⑤ 교육 · 과학	교육분야에서 간문화대화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간문화능력’이라고 지칭하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해야 한다. 이 간문화능력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은 또한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위해서도 역시 기여한다.
⑥ 일자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과 일자리에서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 상태는 도전과 더불어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다.

〈표 7〉 계속

주제	개요
⑦ 언어의 다양성	유럽연합의 확대와 더불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간문화대화에서 어학지식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운 언어의 습득은 언제나 해당하는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풍부함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언어의 다양성에 대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⑧ 청소년	청소년을 위해 간문화대화의 진흥은 매우 중요하다. 그 까닭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장래를 위한 능력과 역량이 습득되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와의 만남과 공존은 호기심과 더불어 세계 여러 곳의 동년배를 만나고자 하는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출처: Europaeische Kommission, 2009: 5 재구성

V. 결 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요약 및 결론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첫째, 간문화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볼 때, 다문화적 현실(다문화성)에 대하여 간문화담론·소통·대화를 통하여 보다 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간문화 만남·선택·변형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탐색운동과 시험적 운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도와 움직임은 네 가지 측면(사이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는 의미에서의 간성,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의 간문화성, 투쟁과 대화로서의 간문화적 만남, 토론과 논쟁으로서의 간문화적 선택과 변형)에서 다문화주의 및 초문화주의와 구별할 수 있다.

둘째, 단일한 통일성(단일문화)과 다양성(다문화)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간성 혹은 사이공간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홀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임의로 그 발생과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간문화 만남·관계에서 오해나 물이해의 원인이나 출처를 타자에게서 찾지 말고, 타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타자의 시각·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자세와 태도가 요청된다. 간문화이해가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점취득과 관점변경을 수행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영국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나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련의 사회적·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었다. 독일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주도문화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서로 대립한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주도문화 대신에 헌정애국주의를 사회통합의 관건으로 간주하자는 관점과 헌정애국주의를 넘어서서 추가로 공통의 역사·전통·언어·종교 등 문화적인 요소를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문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다문화사회에서 장애물제거에 중점을 두고 간문화를 이해할 경우, 문화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조직의 구성·운영원칙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간문화를 ‘사이에 놓인 문화’ 또는 ‘변동의 과정에 놓여 있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문화(조직원칙, 규칙과 규범), 인적자원의 구성, 물질적인 기초. 그리고 제도의 기본적인 전략추진방향의 네 가지 차원에서 요청된다.

다섯째,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 내 시장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세계화는 많은 나라의 다문화적 성격을 강화시켰으며, 언어와 종교, 민족적·문화적 집단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이 맥락에서 유럽의 여러 사회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 모형과 작별을 고하고 있다. 즉,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여러 문화가 병존하는 사회, 그리고 이주자로 하여금 다수가 지배하는 주류문화에 적응하도록 기대하는 사회와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와 의도는, 예를 들면, ‘간문화도시’와 ‘간문화대화’를 중심으

로 한 간문화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오늘날 다문화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간문화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맥락을 적절하게 다루고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간문화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사회가 수반하는 사회통합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간문화에 놓여 있으며, 특히 이론적으로 성찰된 실천적 간문화가 요청된다. 결국 여러 문화의 만남을 위한 교차점도 간문화소통이고, 다문화적 공동생활의 구조를 위한 접점 혹은 연결고리도 역시 언제나 간문화소통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원, 글로컬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사회: 공존의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와 인간*, 1(1), 2012, 63-89.
- 오정은, 네덜란드의 외국계 주민 통합정책 연구: 틸부르크(Tilburg)시의 상호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9(3), 2011, 189-215.
- 육주원 · 신지원,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EU연구*, 31, 2012, 111-139.
- 장준호, 독일에서 애국주의 개념과 변천: 애국주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해결의 인륜적 애국심과 현재의 유패한 애국심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2), 2012, 85-106.
-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서울: 강현출판사), 2010.
- ,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간문화적 행위영역과 실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3(1), 2013, 3-36.
- 허영식 · 김진희,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대한 동향과 함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3(3), 2013, 31-60.
- 허영식 · 정창화, *간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a.
- 허영식 · 정창화, *간문화성과 한국의 정체성* (서울: 원미사), 2012b.
- Conrad, N., Erste Geldstrafen fuer Nikab-Traegerinnen, <http://www.dw-world.de> (2011년 9월 23일 검색).
- Demorgon, J., Kordes, H., Multikultur, Transkultur, Leitkultur, Interkultur, H. Nicklas, H. et al. (eds.), *Interkulturell denken und handeln.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2006, 28-36.
- Europäische Kommission – Generaldirektion Bildung und Kultur, *Europäisches*

Jahr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2008 – Hoehepunkt, Luxemburg: Amt fuer amtliche Veroeffentlichunge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2009.

Figel, J., Vorwort, Europaeische Kommission – Generaldirektion Bildung und Kultur. Europaeisches Jahr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2008 – Hoehepunkt, Luxemburg: Amt fuer amtliche Veroeffentlichunge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2009, i .

Georgi, V., Citizenship and Diversity, Georgi, V. (ed.), The Making of Citizens in Europe: New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8, 79–86.

Intercultural City, <http://www.interculturalcity.com/about.htm> (2009년 8월 검색).

Kleber, R., Burkaverbot in Frankreich in Kraft getreten, <http://www.dw-world.de> (2011년 4월 12일 검색).

Lammert, N, Gewissheiten und Zweifel. Zur deutschen Debatte ueber einen umstrittenen Begriff und einen wachsenden Konsens, Lammert, N. (ed.), Verfassung · Patriotismus · Leitkultur. Was unsere Gesellschaft zusammenhaelt, Hamburg: Hoffmann und Campe, 2006, 134–145.

Lau, J., Migranten und das nationale Geschichtsbild: Eine Leitkultur muss immer neu ausgehandelt werden, Das Parlament, 3, 2007, 5.

Liebsch, B., Sensibilitaet und interkulturelles Verstehen als Politikum. Zwischen opportuner Rhetorik und befremdlicher Ueberforderung, Hirsch, A., Kurt, R. (eds.), Interkultur – Jugendkultur. Bildung neu verstehen, Wiesbaden: VS, 2010, 37–56.

Michalowski, I., Vom nationalen Integrationsmodell zum europaweiten Pragmatismus?, Politische Bildung, 3, 2006, 26–45.

Porschke, A., Deutsch-peruanische Missverstaendnisse. Von der Entzauberung

des Paradieses, Kumbier, D., Schulz von Thun (eds.),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Methoden, Modelle, Beispiel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2011, 91-107.

Terkessidis, M., Interkultur, Berlin: Suhrkamp, 2010.

Thraenhardt, D., Integrationsrealitaet und Integrationsdiskurs, <http://www.bpb.de> (2011년 4월 1일 검색).

Waldenfels, B., Fremderfahrung, Fremdbilder, Fremdorte. Phaenomenologische Perspektiven der Interkulturalitaet, Hirsch, A., Kurt, R. (eds.), Interkultur - Jugendkultur. Bildung neu verstehen, Wiesbaden: VS, 2010, 21-35.

Abstract

Interculturalism as an Approach towards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Huh, Young-Si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interculturalism as an approach towards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 concept of interculturalism and its characteristics, th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ism and transition towards interculturalism, and some policy-oriented and institutional practical cases of interculturalism for social integration.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Again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of interculturalism,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multicultural reality or multiculturalism more appropriately in terms of intercultural encounter, communication, and dialogue.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r probability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we need especially the attitudes of perspective-taking and -changing on the part of an agent himself/herself vis-à-vis other person(s) or alien/foreign group(s). In this context, it is needed to pay more attention to some intercultural works such as intercultural c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and derive relevant consequences for introducing and consolidating interculturalist approaches in our society.

Key Words: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ism, Leading Culture Debate, Intercultural City, Intercultural Dialogue

[부기사항]

1. 제목: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접근방안으로서의 간문화주의
(Interculturalism as an Approach towards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2. 목차
 - I. 서론
 - II. 간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 III.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간문화주의로의 전환
 - IV. 사회통합을 위한 간문화주의의 정책적·제도적 실천사례
 - V. 결론
3. 저자: 허영식(Huh Young-Sik)
4. 직위: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5. 연락처: huhyousi@cje.ac.kr / 043-299-0734